

---

제2023-4회

# 중앙운영위원회

2023. 2. 10.

# 보 고 안 건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2. 9.

안 건 제 출 자 총학생회장 강동재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총장-학부 총학생회 간담회 진행
  - 일시: 2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본관 2층 총장실
  - 참석자: 이광형 총장, 신병하 학생생활처장, 이수진 학생정책처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장, 한정현 학부 부총학생회장
  - P/NR 제도 관련 학생 의견을 공유함. (카이스트 신문 협조 설문조사의 중간 결과 근거, 806명 응답) 이를 통해, 학교에 도입되는 제도에 학생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후속 논의 이어갈 것을 요청함.
  - 군 복무경험 인성/리더십 II AU 인정 제도 관련 개선을 요청함.
  - 총장님과의 딸기파티를 제안함. 총장의 응답으로 2023년 3월 말~4월 초 중 해당 행사 진행 계획을 세움. 총장과 학생들 20여명(학부·학과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를 준비하여,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 첫화사 간담회 학생 위원 배석을 요청함. 2월 첫화사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참여를 진행함. (2월의 경우, KAIST의 타 행사로 인하여 총장실장실에서 Zoom으로 참석함)
- 제2023-2회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참석
  - 일시: 2월 7일(화) 오전 10시
  - 장소: 본관 1층 제1회의실
  - 안건: 제2023-1회 서면결의 보고 등 보고안건 2건, AI특별지정전공 교과목 추가 및 변경 (안) 등 심의안건 5건.
- 2월 첫화사 간담회 참석
  - 일시: 2월 7일(화) 오후 4시
  - 장소: 본관 2층 총장실장실
  -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자 총장실장실 방문하였으며, 당일 타 행사로 인해 현장에서 Zoom으로 참석함. 1월 첫화사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2월 첫화사 건의 사항을 전달받음.
- 대전광역시청 과학협력과 주관 <대학 총학생회 임원과의 간담회> 참석

- 일시: 2월 8일(수) 오후 4시
- 장소: D-라운지 (신세계 오노마호텔 20층)
- 주재: 대전 경제과학부시장
- 참석자: 배재대학교 총학생회장, 배재대학교 사무총장, 한남대학교 총학생회장단, 한밭대학교 총학생회장, 충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 KAIST 학부 총학생회장단,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단
- 지역 청년들 의견 공유 및 해당 내용 대전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
- '청년이 행복한 대전 만들기' 관련 논의를 포함하여 대전 내 타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 대덕특구 순환버스(대전버스 특구1) 운영 연장 및 대전시 교통 개선을 건의함.

○ P/NR 제도 관련 교무처 미팅 진행

- 일시: 2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본관 2층 교무처장실
- 참석자: 이태식 교무처장, 신병하 학생생활처장, 이수진 학생정책처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장, 한정현 학부 부총학생회장
- 제2023-1회 학사·연구심의위원회(1월 26일) 및 총장님 간담회(2월 1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P/NR 제도 관련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무처장과 미팅을 진행함. 카이스트 신문사의 협조를 통해 'P/NR 제도 찬반 관련 학부생 설문조사 최종 결과지'를 공유받았으며 해당 내용을 교무처장 및 학생생활처장, 학생정책처장께 전달함.

○ KAIST 협동조합 설립 TF 회의 참석

- 일시: 2월 9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창의학습관 에듀 4.0 강의실 405호
- 참석자: (대면) 신병하 학생생활처장, 이수진 학생정책처장, 임철수 카이스트 협동조합 이사, 김재호 학생복지위원회 코인노래방 TF장, 석현정 교육원장, 서용석 시설관리부장, 문영주 시설팀장, 방동석 학생지원팀장, 김건철 고객경영팀장, 이진호 고객경영팀, 최동혁 대학원 총학생회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장, 한정현 학부 부총학생회장 (비대면) 김승재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유은실 카이스트 협동조합 이사장
- 비영리법인 'KAIST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과 설립동의자들의 출자금액 3천만 원 이상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구체적 Action item 계획 및 해당 협동조합 신설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 방향과 활동에 대해 컨설팅받고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가는 것으로 논의함.

□ 의결문안

-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보고안건 제2호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2. 8.  
안 건 제 출 자 VOK 국장 김선호  
안건 상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51조제2항에 따라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개정과정
    - 개정안 발의 및 공고: 2023. 1. 3. 11:09 (휴대전화 메신저 이용)
    - 개정안 심의: 2023. 1. 26. 21:00 (제1회 임시 총회)
    - 개정안 공포: 2023. 1. 26. 22:10
  - 개정취지
    - 자치규칙으로써의 형식적 구조 보완
    - 비정상적인 권력 집중 방지, 민주성 증진
    - 관습으로 굳어진 현행과 다른 내용 수정, 삭제
    - 틀린 맞춤법 수정
  - 주요골자
    - 국칙의 장, 절 수준 구조 변경
    - 제1장 총칙에 조직 추가
    - 국장단 선출 선거 방식 보완
    -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조항 간소화
    - 국장과 부국장의 국원 구분 명시
-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결 확인: 붙임
-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별첨1
-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
-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목적 및 경위: 별첨3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제151조(자치규칙)**

    1.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회칙개정소위원회 심의(검토) 완료(2023. 2. 8.)
- 의결문안
  -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안건을 의결한 회의체 명칭	VOK 총회
해당 회기의 명칭	2023 제1회 임시 총회
해당 회기의 일시	2023. 1. 26.
안건제목	논의안건 1 [2023 카이스트 방송국 VOK 국칙 개정안 심의]
표결결과	총원: 20명/재적: 20명 재석: 19명/찬성: 18명/반대: 0명/기권: 1명
해당 의결사항의 의사	<p>1. 큰 틀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국칙: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국원, 제4장 회의, 제5장 활동, 제6장 재정, 제7장 징계 및 포상, 제8장 기타, 부칙</li> <li>- 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장 구성원(제1절 국원, 제2절 임원, 제3절 지도교수), 제3장 회의(제1절 총회, 제2절 국원회의, 제3절 임원회의), 제4장 활동, 제5장 재정, 제6장 기타, 부칙</li> </ul> <p>2. 각 조항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상적으로 긴 제8조, 제15조 등을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 개정함</li> <li>- 제15조제3항의 중의성을 해소하여 개정함</li> <li>- 중복되는 표현이 나오는 제8조제7항의 내용을 통합하여 개정함</li> <li>- 이외에 개정취지에 맞게 여러 조항을 개정함</li> </ul>
별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별첨1</li> <li>-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li> <li>- VOK 자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목적 및 경위: 별첨3</li> </ul>

## 보고안건 제3호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선출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2. 8.

안 건 제 출 자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회장단 등 선출직의 선출·탄핵·사퇴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동아리연합회에서 다음과 같이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을 선출함.
  - 비례 대의원1: 김우진(20, 전기및전자공학부)
  - 비례 대의원2: 안희진(21, 수리과학과)
- 선출 과정
  - 동아리연합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함.

참고사항

- 비례 대의원 선출 규정: 동아리연합회칙 제32조 및 제33조

■ 동아리연합회칙

**제32조(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3조(권한)**

확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2.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3.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4.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5. 분과구 및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6.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의결문안

-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대의원 선출을 의결한 회의체 명칭	동아리연합회 확대운영위원회
해당 회기의 명칭	2023년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 (1월, 정기회)
해당 회기의 일시	2023. 1. 18.
안건제목	인준안건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인준
표결결과	총원: 21명/재적: 21명 재석: 21명/찬성: 21명/반대: 0명/기권: 0명
해당 의결사항의 의사	김우진(20, 전기및전자공학부) 및 안희진(21, 수리과학과)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함.



# 심 의 안 건

## 심의안건 제1호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1분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2. 10.  
안 건 제 출 자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부득이한 사유로 기 심의·의결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이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0%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함.
  - 동아리박람회 예산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함.
  - 추가경정예산안
    -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 붙임1
    -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붙임2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제170조(예산추가경정)

1.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1.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2.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2.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 의결문안
  -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1분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붙임1**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

기구명	담당	소항목	지출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비고	
			출처	세부항목					코드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기획국	동아리박람회	본회계	팜플렛	G2	₩0	-	-%	
			자치	팜플렛	G3	₩0	₩57,000	-%	
			자치	부스 비품 구매	G4	₩0	₩100,000	-%	
			자치	코팅지 구매	G5	₩0	₩10,000	-%	
			자치	실무비	G6	₩0	₩130,000	-%	
			합계			₩0	₩297,000	-%	
총계			₩0	₩297,000	-%	전체 대항목 총계			

기 편성 예산 총지출	추가경정예산	비율
₩29,557,736	₩297,000	1.00%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기구명	출처	항목	코드	수입			비고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학생	중앙회계 지원금	AA	₩0	₩0	-%	
		학생회계 이월금	AB	₩2,233,249	₩123,717	5.54%	
		예금결산이자	AC	₩451	₩22	4.88%	
		<b>계</b>		<b>₩2,233,700</b>	<b>₩123,739</b>	<b>5.54%</b>	
	본회계	동아리연합회 사업 지원	BA	₩0	₩10,000,000	-%	
		본회계 이월금	BB	₩0	₩538,736	-%	
		동아리 지원금 환수	BC	₩3,354,507	₩0	0.00%	
		<b>계</b>		<b>₩3,354,507</b>	<b>₩10,538,736</b>	<b>314.17%</b>	
	자치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	CA	₩7,139,712	₩24,022,185	336.46%	
		동아리연합회비	CB	₩5,427,000	₩0	0.00%	
		창고 대여 사업 수익금	CC	₩0	₩0	-%	
		동아리소개책서 광고 수익금	CD	₩0	₩0	-%	
		오입금 수입	CE	₩0	₩0	-%	
		예금결산이자	CF	₩1,513	₩3,000	198.28%	
		물품 폐기수익	CG	₩0	₩100,000	-%	E1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수익
		<b>계</b>		<b>₩12,568,225</b>	<b>₩24,125,185</b>	<b>191.95%</b>	
	<b>총계</b>			<b>₩18,156,432</b>	<b>₩34,787,660</b>	<b>191.60%</b>	

기구명	담당	소항목	출처	세부항목	코드	지출			비고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장	집행부	자치	대의 사업 홍보비	A1	-	₩50,000	-%	집행부원 모집 홍보 등
			자치	집행부 회의비	A2	-	₩100,000	-%	2022 상반기 결산 * 1/2
			<b>계</b>			<b>₩150,000</b>	<b>₩150,000</b>	<b>-%</b>	
		의결기구	자치	회의비	B1	-	₩150,000	-%	
			자치	교통비	B2	-	₩600,000	-%	12명 * 50000(KTX왕복운임(서울-대전 기준)) * (1월 정기회 1회)
			<b>계</b>			<b>₩0</b>	<b>₩750,000</b>	<b>-%</b>	
		<b>합계</b>			<b>₩0</b>	<b>₩900,000</b>	<b>-%</b>		
	사무국	사무용품	학생	복합기 토너	C1	₩0	-	-%	
			본회계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	C2	₩1,441,820	₩538,736	37.36%	
			본회계	사무용품 구입비	C3	₩0	₩2,000,000	-%	
			학생	복사기 임대료	C4	₩0	-	-%	
			학생	사무용품 구입비	C5	₩146,600	₩120,000	81.86%	
			<b>계</b>			<b>₩1,588,420</b>	<b>₩2,658,736</b>	<b>167.38%</b>	
		<b>합계</b>			<b>₩1,588,420</b>	<b>₩2,658,736</b>	<b>167.38%</b>		
	관리국	동아리방 재배치	본회계	이사비용	D1	₩0	₩0	-%	
			본회계	도어락 수리	D2	₩0	₩0	-%	
			<b>계</b>			<b>₩0</b>	<b>₩0</b>	<b>-%</b>	
		공간개선	본회계	물품 폐기비용	E1	₩0	₩0	-%	등록취소 동아리방 방치 물품 등
			학생	동아리연합회 창고 개선 사업	E2	₩541,500	-	-%	
			<b>계</b>			<b>₩541,500</b>	<b>₩0</b>	<b>0.00%</b>	
		<b>합계</b>			<b>₩541,500</b>	<b>₩0</b>	<b>0.00%</b>		
	기획국	동아리소개책서	본회계	소개책서 출판 비용	F1	₩0	₩5,000,000	-%	
			자치	소개책서 출판 비용	F2	₩0	₩0	-%	
			<b>계</b>			<b>₩0</b>	<b>₩5,000,000</b>	<b>-%</b>	
		동아리박람회	본회계	전막	G1	₩0	₩2,500,000	-%	
			본회계	팝콘	G2	₩0	₩0	-%	
			자치	팝콘	G3	₩0	₩67,000	-%	
자치			부스 비품 구매	G4	₩0	₩100,000	-%		
자치			코팅의 구매	G5	₩0	₩10,000	-%		
자치			실무비	G6	₩0	₩130,000	-%		
		<b>계</b>			<b>₩0</b>	<b>₩2,797,000</b>	<b>-%</b>		
	<b>합계</b>			<b>₩0</b>	<b>₩7,797,000</b>	<b>-%</b>			
활동비 책임자	활동비 지급	자치	활동비	H1	₩0	₩17,694,000	-%		
		<b>계</b>			<b>₩0</b>	<b>₩17,694,000</b>	<b>-%</b>		
	<b>합계</b>			<b>₩0</b>	<b>₩17,694,000</b>	<b>-%</b>			
회계책임자	기타회계	자치	증명서 발급	I1	₩4,400	₩5,000	113.64%	회계 서류 작성용	
		자치	동연회비 환급	I2	₩21,000	₩0	0.00%		
		자치	오입금 환급	I3	₩0	₩0	-%		
		자치	동장청리(집행부명) > 단체명의 동장	I4	₩0	₩0	-%		
		학생	동장청리(집행부명) > 단체명의 동장	I5	₩0	₩0	-%		
		<b>계</b>			<b>₩25,400</b>	<b>₩5,000</b>	<b>19.69%</b>		
	예비비	학생	예비비	J1	₩5,100	₩0	0.00%	식재될 항목	
		자치	예비비	J2	₩0	₩0	-%	식재될 항목	
		<b>계</b>			<b>₩5,100</b>	<b>₩0</b>	<b>0.00%</b>		
			<b>합계</b>			<b>₩30,500</b>	<b>₩5,000</b>	<b>16.39%</b>	
<b>총계</b>				<b>₩2,160,420</b>	<b>₩23,054,736</b>	<b>1344.87%</b>	전체 대항목 총계		

학생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2,233,700	₩123,739	5.5%
지출	₩693,200	₩120,000	17.3%
<b>잔액</b>	<b>₩1,540,500</b>	<b>₩3,739</b>	<b>0.2%</b>

본회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3,354,507	₩10,538,736	314.2%
지출	₩1,441,820	₩10,038,736	696.3%
<b>잔액</b>	<b>₩1,912,687</b>	<b>₩500,000</b>	<b>26.1%</b>

자치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12,568,225	₩24,125,185	192.0%
지출	₩25,400	₩18,896,000	74393.7%
<b>잔액</b>	<b>₩12,542,825</b>	<b>₩5,229,185</b>	<b>41.7%</b>

총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18,156,432	₩34,787,660	191.6%
지출	₩2,160,420	₩23,054,736	1344.9%
<b>잔액</b>	<b>₩15,996,012</b>	<b>₩5,732,924</b>	<b>35.8%</b>

## 심의안건 제2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2. 6.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회칙안을 발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개정취지
    - 심의 원칙과 회계 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복잡하고 경직된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이고 유연한 예산안 심의로 바꾸기 위함.
    -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결기구 및 재정 등 총학생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제59조의2를 신설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함.
    - 제165조를 개정하여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을 가을학기 종강일로 변경함.
    - 제167조를 개정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함께 심의하여야 하는 원칙을 예산안 및 결산을 각각 심의하는 원칙으로, 심의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2회로, 심의 주기를 상반기, 4분기, 1분기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변경함.
    - 제168조를 개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층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별첨1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위: 별첨3
- 참고사항
  - 회칙개정소위원회 심의(검토) 완료(2023. 2. 8.)
- 의결문안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심의안건 제3호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2. 8.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85조제1항제1호 및 제19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기 위함.

주요내용

개정취지

- 예산안 비율을 결정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경직된 예산안 심의 방식을 유연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함.

주요골자

-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예산안 비율을 매 반기 초에만 결정할 수 있는 시기적 제약을 해소함.
-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 또는 기층기구의 예산안 비율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별첨1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목적 및 경위: 별첨3

의결문안

-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심의안건 제4호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

발 의 연 월 일 2023. 2. 6.  
 안 건 발 의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본회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고 기층기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층기구회계 재정분배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에 관하여 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2021 제21차 중앙운영위원회 논의안건1에서 의결함)'의 내용을 정비함.
-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를 정성적으로 반영
  -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비중 증가
  -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가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 붙임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p><b>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b>                  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p>
<p><b>제172조(재정분배 기준)</b>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li> <li>2.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li> <li>3.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li> <li>4.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li> <li>5.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li> <li>6. 소속 인원 비율</li> <li>7.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li> </ol>

- 기층예산소위원회 심의(검토) 완료(2023. 2. 10.)

□ 의결문안

-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2023. 2. 1.)

## 1 개요

- (제안이유) 본회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고 기층기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층기구회계 재정분배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에 관하여 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2021 제21차 중앙운영위원회 논의안건1에서 의결함)'의 내용을 정비함.
- (적용) 본 수정안은 기층기구회계 재정분배 기준으로서 기층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의결하는 데 적용함.

## 2 ABCI 등급제

- I등급: 재심사 대상 (해당 기구는 재심사 후 예결산 심의가 완료되지 전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음)
  - 기층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여함. 다만, 지각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점함.
    1. 제출 기한 초과 후 24시간 이전 제출: 운영 점수 2% 감점
    2. 제출 기한 초과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전 제출: 운영 점수 5% 감점
    3. 제출 기한 초과 후 72시간 후 제출: C등급 부여
    4. 기층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는 회의의 개회 시점까지 미제출: I등급 부여

- 제출 서류가 학생회칙 및 세칙·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반려된 경우에 부여함.
  -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해당 반기 사업계획서
    2. 해당 반기 예산안
    3. 직전 반기 사업보고서
    4. 직전 반기 결산
  - 다만, 제출 서류가 반려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해당 기구에 반려되었음을 전달하여야 함.
- I등급을 받은 기구가 재심사 후 받을 수 있는 최대 등급은 C등급으로 제한함.<sup>1</sup>
- C등급: 기층기구회계 지원금 0원
  - 합당한 사유 없이 결산 등 회계감사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점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여함.
    - 합당한 사유: 학생회계(재원-학생회비), 자치회계(재원-자치) 등 사용 기록이 전무하여 감사원에서도 감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재심사 기준에 해당하여 I등급에서 재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에 부여함.
  - C등급을 받더라도, 기층기구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다른 재원(본회계, 자치 등)을 사용한 예산은 집행 가능함.
- A, B등급: 운영 점수 등급에 따른 분배에만 영향
- 기층기구회계 총액의 60%는 인원 비례로 분배하고, 40%는 운영 점수 등급에 따라 분배함.

---

<sup>1</sup> 예산 운용 상 편의성을 위함. 각 기구의 ABC 등급이 결정된 이후 I등급 부여받은 기구가 A나 B를 받을 경우 전체 기구별 받을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다시 조정하여야 함. 이에 따라 기 지급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 인원 비례 분배
  - (비율) 해당 반기 기층기구회계 총액의 60%는 인원 비례로 분배함.
  - (인원 기준) 학적팀에서 제공받은 해당 학기 학사과정 학과별 재적생(재학/휴학 모두 포함) 수를 기준으로 함.<sup>2</sup>
  
- 운영 점수 등급 분배
  - (비율) 해당 반기 기층기구회계 총액의 40%는 운영 점수 등급에 따라 A등급과 B등급 기구별 분배 비율이 3:2가 되도록 분배함.
    - A등급은 기구의 운영 점수가 상위 50% 이내에 해당할 경우에 부여함. C나 I등급이 아니면서 A등급이 아닌 경우에 B등급을 부여함.
  - (A, B 등급) A, B 등급은 운영 점수 총점을 계산하여 결정함.
    - 운영점수는 총점 22점으로 다음 각 호의 합으로 정함.
      1. 의결기구 출석 점수: 10점
      2. 회계감사보고서 감사 점수: 10점
      3. 번역 점수: 2점
    - 회의 출석 점수(10점)
      1. 기간: 직전 반기 기록을 반영함. 다만,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 의결로 반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10점 만점에서 사유에 따라 감점함.
        - 출결 기준에 따른 결석 횟수 당 1점 감점함.
        - 출결 기준에 따른 지각, 조퇴 횟수 당 0.5점 감점함.
        - 기구 내 중복감점을 허용함. 예를 들어, 1번의 회의에 5명의 비례대위원이 불참했을 경우 1인당 1점씩 총 5점을 감점함.
        -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성원 점검<sup>3</sup>에 1회 이상 불참한 차수당 0.5점 감점함.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중앙운영위원/전학대회 대의원에 대하여 중복감점을 하지 아니하므로 성원 점검에 2회 이상 불참하여도 해당 회의의 전/후 참석 기록이 있으면 0.5점만 감점함.

<sup>2</sup> 학생회칙 제97조, 제105조 및 제172조제6호, 재정운용세칙 제26조제3항

<sup>3</sup> 휴회 성원 점검, 속회 성원 점검 등

- 권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출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함.
- 3. 전학대회 내 기구의 할당 의석별 감점 사유는 각각 점수에 반영함.
- 4. 출결 기준은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름.
- 회계감사보고서 감사 점수(10점)
  1. 기간: 직전 반기 기록을 반영함.
  2. 감사 점수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함.
    - 전학대회에서 심의·의결된 직전 반기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 점수를 대입함.
    - 직전 반기 회계감사보고서가 전학대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전학대회에서 심의·의결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 점수를 대입함.
    - 합당한 이유로 감사 점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층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감사 점수가 존재하는 가장 최신의, 전학대회에서 심의·의결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 점수를 대입함.
    - 그 밖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함.
- 번역 점수(2점)
  1. 기간: 전 반기 기록을 반영. 다만,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 의결로 반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번역 점수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함.
    - 전학대회에서 보고된 직전 반기 번역평가보고서의 번역 점수를 대입함.
    - 직전 반기 번역평가보고서가 전학대회에서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전학대회에서 보고된, 번역평가보고서의 번역 점수를 대입함.
    - 합당한 이유로 번역 점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층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번역평가보고서에서 번역 점수가 존재하는 모든 기층기구의 번역 점수의 평균값을 그 기층기구의 번역 점수로 대입함.
    - 그 밖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함.